

# 메리츠 원달러스마트레버리지 목표전환 사모증권투자신탁2호[파생상품]

## 집합투자규약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55365BN9440]

### 제1장 총칙

####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메리츠자산운용(주)과 신탁업자인 (주)하나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포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단위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6.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7.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8. "사모형"이라 함은 모집·매출 이외의 방법으로만 판매되고 법 제9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투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한국금융투자협회"라 함은 법 제 283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10. "누적기준가격"이라 함은 제 30 조의 회계기간의 경과에 따른 결산이 있을 경우 각기에 발생한 이익분배율(세전 기준)을 반영한 기준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는 아니한다.
11. "전환조건"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누적기준가격이 1,060 원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2. "운용전환일"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상기 전환조건에 해당한 영업일을 기산일으로 하여 제 3 영업일을 말한다.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 **메리츠 원달러스마트레버리지 목표전환 사모증권투자신탁 2호[파생상품]**"이라 한다. 다만, 제2조12호 운용전환일 이후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 **메리츠 원달러스마트레버리지 사모증권투자신탁 2호[채권-재간접형]**"으로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형(파생형).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 증권형(채권-재간접형)
3. 개방형
4. 단위형
5. 사모형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령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 등 제공, 운용전문인력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 지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이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신탁계약의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간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하되, 2019년 10월 24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전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의 장외파생상품의 상환금이 회수되는 날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 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9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조 좌로 한다.

### 제7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총 좌수 범위 내에서 추가 설정을 할 수 있다.

### 제8조(신탁금의 납입)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 투자신탁금을 제1항의 방법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 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 제2장 수익증권 등

### 제9조(수익권의 분할)

-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 계좌부("수익증권 투자자 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투자자 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 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 ④ 수익증권 투자자 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그 수익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의 결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수익증권 투자자 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증권의 양도 시 양수인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년 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합병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제15조 (자산운용지시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 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 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 제16조(투자목적)

- 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미국달러(USD) 관련 장외파생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이 제2조12호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 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국달러(USD) 관련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2. 법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3.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0%로 한다.
2. 운용전환일 이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3. 제17조제2항에 의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 다.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 3.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4. 증권의 차입
- 5.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이 전환조건을 충족하여 운용전환일이 도래한 경우 그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1월간
  - 3.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4.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5.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6.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② 제2조제2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및 운용전환일이 도래한 경우 그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1월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집합투자기구
-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 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 제23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17시(오후5시)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제25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자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실질수익자(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 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 제26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17시(오후5시)경과 후 환매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③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17시(오후5시)경과 후 환매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지급한다.

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환매연기)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법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 2. 환매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제6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 제28조(집합투자재산 평가)

-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는 그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주체 및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자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기준가격 산정 및 제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산정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

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 제30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제31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②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다.

#### 제32조(이익분배금)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증권의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분배를 유보한다.

1. 투자신탁재산의 미실현 평가이익을 유보하는 경우

2. 총 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로서 실현된 이익과 평가이익을 모두 유보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제33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자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자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제7장 보수 및 수수료 등

### 제35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6개월 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일 이전까지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7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2. 운용전환일 이후부터 투자신탁계약 종료일까지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7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 제36조(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0로 한다.

### 제37조(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8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6.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8.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관리비용

## 제8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 제39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 내용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체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0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익자 전원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제41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4.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제42조(미지급금의 처리)

-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 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

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제9장 보칙

### 제43조(투자신탁의 합병)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4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를 통한 매도

### 제45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 제2항 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손해배상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

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47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 제48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9조(관할법원)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메리츠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이정복(인)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주)하나은행  
은행장 함영주(인)